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 3. 13.(목) 10:00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 육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유상용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2025년 3월 4일

○ 회부일자: 2025년 3월 5일

3.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인용 조항 및 용어를 현행화하고,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개정(안 제1조)

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개정(안 제3조제3항)

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개정(안 제7조)

5. 검토의견

가. 조례 개정이유 검토

○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1.1.12.)에 따라 변경된 사항¹⁾과

1) 「지방자치법」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그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9.>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²⁾ 등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의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및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에 따라’ 를 ‘제78조(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으로 개정한 것이며
- 안 제3조제3항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폐회 청구)’ 를 ‘제19조(조례의 제정과 폐회 청구)’ 로 “주민은 지자체의 조례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과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청구대상·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따로 정한다” 는 내용으로 자치법이 전부개정 되어 조항이 바뀌었으며
- 안 제7조 「지방자치법」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를 ‘제148조(재정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 등)’ 로 상위법 개정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 또한, 그 밖에 사전절차 및 입법안 심사 결과 특이 사항이 없고,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맞는 등 전체적인 조문 체계와 관련 집행 부서와 협의, 개정 주요 내용이 법령에 위배 되는 사항이 없는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됨
- 다만, 조례 제정(2012년) 이후 상위법이 2021년 개정되었지만 조례 개정이 늦은 감이 있어, 관련 부서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빠른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이 필요함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자치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로, “행정안전부장관”·“주무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